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23.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 일정 및 장소	4
6.	주요 감사사항	6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제출	6
8.	감사요령	7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8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26일(목) : 1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67개)
 - 위원회 선정기관(5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제1호 대상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한국예술종합학교 (5) 국립전통예술중학교 (6)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7) 국립중앙박물관 (8) 국립국어원 (9) 국립중앙도서관 (10) 국립장애인도서관 (11) 국립중앙극장 (12) 국립국악원 (13) 국립민속박물관	(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5) 국립한글박물관 (16) 국립현대미술관 (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 예술원사무국 (19) 해외문화홍보원 (20) 한국정책방송원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2) 국립문화재연구원 (23) 국립고궁박물관 (2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5) 국립무형유산원 (26) 궁능유적본부	267}
제2호 대상기관	해당사항 없음		
(1) 한국문화정보원 제3호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상기관 (3) 세종학당재단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 한국저작권위원회(16) 한국언론진흥재단(17) 국제방송교류재단(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97ዝ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5) 예술의전당	(19) 한국문학번역원	
	(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 한국저작권보호원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1) 국민체육진흥공단	
	(8)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22) 대한체육회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3) 대한장애인체육회	
	(10) 한국콘텐츠진흥원	(2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1) 영화진흥위원회	(25) 태권도진흥재단	
	(12) 영상물등급위원회	(2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 한국영상자료원	(27) 한국관광공사	
	(14) 게임물관리위원회	(2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9) 한국문화재재단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12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고
제4호 대상기관	 (1) 국립극단 (2) 국립발레단 (3) 국립오페라단 (4) 국립정동극장 (5) 국립현대무용단 (6) 서울예술단 	 (7) 한국문화원연합회 (8) 뉴스통신진흥회 (9) 언론중재위원회 (1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2) 스포츠윤리센터 	12개

※ 업무보고 : 연합뉴스 *비공개

4.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이의자 . ㅎ이묘	
	◇ 위원장 : 홍익표	
,	◇ 위원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위원 : 이용호(국민의힘)
1	유정주(")	김승수(")
감	이개호(")	김예지(")
	이병훈(")	배현진(")
사	이상헌(")	이 용(")
	임오경(")	
위	임종성(")	
	전재수(")	◇ 위원 : 류호정(비교섭단체)
원		황보승희(")
72		
		(16인)
사	◇ 위원회 직원(14인)	◇ 의원보좌진(16인)
	-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무	- 전문위원 정환철	◇ 정책연구위원(3인)
	- 입법심의관(3급) 김충섭	
보	- 입법조사관(4급) 김려진, 김형	섭 ◇ 속기주무관(3인)
工	- 입법조사관(5급) 이기연, 홍민	희,
	이자영, 문정	열
조	- 입법조사관보 문종배, 이원	재
	- 주무관 박금숙, 권현	라,
자	권영미	

5. 감사 일정 및 장소

□ 총 국감기관 수: 67개 기관 (※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총 7일】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0(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 (1개 기관)	국회		
10.11(수)		감 사 준 비			
10.12(목)	10:00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궁능유적본부,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0개 기관)	국회		
10.13(금) ~ 10.14(토)		현장 시찰	목포	KTX, 버스	
10.16(월)		감 사 준 비			
10.17(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홍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15개 기관)	국회		
10.18(수)		감 사 준 비			

일 자	시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9(목)	10:0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4개 기관)	국회		
10.20(금)		현장 시찰 (1반)	파주 등	버스	
10.20(日)		현장 시찰 (2반)	평창 등	버스	
10.23(월)	10:0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정동극장,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원연합회 (21개 기관)	국회		
	19:00	연합뉴스(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 사옥	버스	
10.24(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 (6개 기관)	국회		
10.25(수)	가 사 준 비				
10.26(목)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6. 주요 감사사항

- 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다.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 내지 '다'항에 관한 사항 포함)
-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보고자료 및 요구자료(공통요구자료 포함) 제출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배부되어야 하며, 동일 자료를 국정감사 당일 감사장에 준비하여야 함.

【업무현황 보고 및 공통요구자료 내용】

- 2023년 업무현황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22년 및 2023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2년 및 2023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2년 및 2023년 민원처리 현황
-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 기타 주요사항
- ※ 업무현황 자료에 전문용어·약자 또는 영문약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설(주석)을 해당 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명기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함.
- (2)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 요구

-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 (2) 각 감사위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함.
- (3) 대상기관의 제출자료는 컴퓨터 기록장치 중 <u>USB</u>로 제출하도록 함.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가) 소관부처 및 소속기관은 국장급 이상
 - (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는 당일 감사대상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2~3명의 집행가부급
- (2)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음.

라. 선서요령

-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 (3)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감사반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함.
- (4) 위원장(감사반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마. 감사진행 순서

- (1) 감사개시 선언
- (2) 위원장(감사반장) 인사
- (3) 증인선서
-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0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o 현황설명
 - o 세부사항 설명
- (5)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 (6) 위원장(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인사
- (7) 감사종료 선언

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 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 감사위원들에게 간사협의를 거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배부
- 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재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를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함.